



인도 비관세 장벽

■ 우리기업이 인도시장 진출시 다수의 비관세장벽으로 수출 및 기업진출에 어려움 경험
* 수입규제, 기술장벽, 복잡하고 차별적인 세제, 투자 장벽, 정부조달 차별, 낙후된 인프라, 불투명한 행정, 노무관리 어려움, 통관지연 등 다수

1. 통관지연 및 비관세장벽

□ 인도 항구에서 다양한 이유로 통관이 1~2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잦아 비관세장벽으로 작용

— 작은 실수(기재오류 등)가 있는 경우에도 통관 보류

* S사는 신용장 개설시 'EPS'를 'ESP'로 기재해 이를 수정해서 통관하는데 3주를 허비. 이 경우, 서류상의 오기 수정과 더불어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음

— 세관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 등 행정절차 불투명에 의해 항공화물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

* 인도의 통관 절차 중 "물품검사(Physical Examination)" 항목 관련 전산시스템의 활용 없이 대부분이 세관원의 수작업에 의지. 세관원의 재량에 따라 일부가 아닌 전체 품목을 검사해 시간이 지체되기도 함. 이는 통관의 지연을 방지하려는 목적의 세관 뇌물 수수가 이뤄지는 등 악순환을 야기하고, 별도의 추가적인 수입자 비용부담이 됨

* 기존에 통관된 제품도 기존과 다른 서류를 요구하기도 하고, 담당 공무원에 따라 관세 부과 여부가 달라짐

* 카탈로그, 샘플 등의 인도 반입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동일한 물품에 대해 다른 관세가 부과됨

— 국제 관례에 의하면 2개월 정도 지나면 항만 측이 내용물을 꺼낸 후 컨테이너는 선사에 반환하는 것이 보통이나 인도에서는 오히려 초과정박 비용(Demurrage Charge)을 컨테이너 소유주에게 부과

* 컨테이너로 수입한 화주가 나타나지 않아 항만 당국이 컨테이너를 1년 이상항구에 묶어둔 사례도 있음

- 항구의 하역설비 노후 및 미비, 항만노조의 빈번한 파업 등으로 인하여 통관절차가 한없이 지연되는 사례 잦음

2. 품질인증 제도 및 비관세 장벽

□ 인도의 품질인증 및 공업 표준규격인 BIS(Bureau of Indian Standard)제도 미비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

- BIS 표준이 의무화되어 있는 품목은 2,000여 개 품목*에 불과하여 새로운 품목에 대한 갑작스런 인증 도입을 고시하는 경우, 충분한 대처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 도입 초기시점부터 1년여 사실상 수입제한조치로 작용

* 2013년 7월 1일 기준

- BIS 인가 신청 관련 대부분의 비용을 수출기업이 부담하는 것도 무역장벽으로 작용

* 신청 수수료, 수속료, 현장 방문 관련 경비, 테스트 비용 등

* 타이어, 철강재 등 주요 공산품에 대한 인증제도가 우리 수출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음

* 인증심사원이 매년 한국의 제조공장을 방문, 사후관리 심사를 진행하는 등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발생

- BIS에 의해 수입제한 품목이 많은 식품은 인도 국내 인증을 위해 Lab으로 보내지는 경우, 항구와 멀리 떨어진 위치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아 15일에서 30일까지 통관이 지연된 경우 발생

□ 식품에 대한 까다로운 유효기간 기준도 비관세 장벽

- 수입 당시 식품의 유효 기간은 본래 제품 수명의 60% 이상이 남아있어야 하며, 제품수명은 제조일과 유효기간 만료일을 토대로 산출하는데 이러한 규정은 인도 국내산 제품과 비교하여 수입산 제품에 대한 차별적인 장애요소

* 수입 식품들에 대하여 인도 관세청은 샘플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지만 인증 받는 시간이 오래 걸리며, 샘플링 테스트를 실시할 만한 실험실도 부족하기 때문에 제품들은 검사를 받기 위해 유료 보관 창고에 장시간 방치되어 있으며, 일부 창고는 식품 보관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

* 실험실의 검사 결과에는 이견을 제시할 수 없으며, 검사 기간에 대한 규정도 없으며, 제품 구분을 정확히 하지 못해 잘못된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음

□ 라벨링 규정도 비관세 장벽 중의 하나이며, 소매를 목적으로 인도에 수입되는 모든 제품들은 중량 및 측정 기준규정(Standard of Weights and Measures Rules)의 조항들을 준수해야 함

- 통관 전 루피화로 표시된 최고 소매가(MRP)를 라벨에 명시하는 것은 수출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며 라벨에 명시된 제품 가격은 세금 산출 근거로 활용
- 한번 정해진 MRP는 수정할 수 없으며,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통관 물량부터 인상이 가능

2011년 3월부터 소비자 제품의 개별포장에 MRP(권장소비자가격)를 부착하도록 권고함. 이는 "CIF (운임보험포함가격)"보다 더 높은 과세 기준으로 적용돼 수입관세 부담이 더욱 높아짐. 저가의 중국 제품의 범람여파로 자국 내 산업보호 차원으로 해석

아래 표는 한국의 의류회사가 물품당 180 루피의 CIF 기준으로 임의로 가격표를 부착했다가 세관이 MRP 감정가를 적용, 10% 이상의 관세를 추가 징수한 경우이며, 유사 사례가 빈번히 발생

CIF 기준 일반 관세율	MRP Value 기준 감정가 관세 추정
180.00	260.00 (MRP 감정가)
1.80 (landing charge 1%)	
+ 18.18 (basic rate)	+ 26.00 (basic rate)
+ 20.00 (cvt add.)	+ 28.60 (cvt add.)
+ 0.40 (E.cess on CVD)	+ 0.57 (E.cess on CVD)
+ 0.20 (S &H E.cess)	+ 0.29 (S &H E.cess)
+ 0.78 (E.cess on all duty)	+ 1.11 (E.cess on all duty)
+ 0.39 (C. S &H E.cess)	+ 0.55 (C. S &H E.cess)
+ 8.87 (SAD)	+ 12.68 (SAD)
48.81 (CIF 가격의 총 27.12%)	69.81 (CIF 가격의 총 38.78%)

3. 기타

□ 바이어의 구매 거부로 인하여 세관에서 수출품 재반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

- 운송된 제품에 대해 바이어가 구매를 거부할 경우, 수출자는 제 3의 바이어에게 판매하거나 아니면 수출지로 재반출해야 하나, 이 경우 인도 세관에서는 원래 계약자(바이어)의 NOC(Non Objection Certification)을 요구
- 바이어가 이런 점을 악용해 NOC를 써 주지 않을 경우 재반출이 불가
- 바이어가 이런 현실을 악용해 시황이 안 좋거나 시장 상황이 불리한 경우 구매를 거부한 후, 수출자의 재반출이 곤란해진 틈을 이용해 재협상을 시도하여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물품을 인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음

□ 인도의 주 경계 통과 시 추가적인 판매세 과세로 수입자의 추가 부담이 발생

- 수출업체가 인도 전역의 판매를 추진함에 있어 장애 요소